

정부에 바라는 결혼·출산 정책 제언

이재희 연구위원

본고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의 결혼·출산 공약을 살펴보았다. 결혼·출산 지원관련 공약으로는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난임 치료 지원강화가 제시되었다. 각 공약별로 연관된 정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공약 이행 시 참고해야할 주요 이슈 및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결혼출산지원 확대에서는 육아휴직 등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공약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택가격 안정화, 난임지원과 관련해서는 초기 집중 지원 강화 및 심리·정서지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국민주권 정부는 이러한 논의점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결혼·출산 페널티’라는 부정적 인식을 결혼과 출산의 긍정적 가치로 전환하여, 결혼과 출산이 모두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에서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결혼·출산 정책을 살펴 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제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목록을 살펴보면 결혼·출산 정책의 특성상 저출생 대책에 포함되

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9번째 공약 “[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에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지원 확대에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난임부부 치료 지

〈표 1〉 결혼·출산 관련 공약 목록

공약	이행방법(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지원 확대)
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난임부부 치료 지원 강화

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 목록. [https://policy.nec.go.kr/plc/commitment/UELPromisePopup.do?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ocrCnvrSeqNo=11230\(2025. 7. 6 인출\)](https://policy.nec.go.kr/plc/commitment/UELPromisePopup.do?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ocrCnvrSeqNo=11230(2025. 7. 6 인출))

원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공약과 관련된 정책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 정책 현황

가.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관련 정책 현황

결혼·출산 지원 확대 공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결혼과 임신, 출산

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최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포함한 결혼서비스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혼서비스 개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결혼 세액공제 등도 도입하였다. 임신·출산지원과 관련하여 2024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가 도입되었으며 첫만남이용권 등도 둘째에 해당할 경우 300만원으로 바꾸쳐 금액이 인상되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원이 확대되어

〈표 2〉 결혼·출산지원 정책

결혼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서비스 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결혼서비스 가격공개(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부부 당 50만원)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
임신·출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사전 건강관리: 모든 20~49세 남녀 대상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검사비 지원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모자보건수첩, 철분제 지원, 엽산제 지원,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 운영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아(0~24개월) 대상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바꾸쳐로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요금 지원
출산전·후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전·후 휴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전·후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남편에게 20일의 휴가 부여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년(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일반급여: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80%(상한 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1개월 250만원~6개월 450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2025년 2월 22일 이전: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기타: 태아 검진시간 허용, 시간외 근로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자료1. 결혼서비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영상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videoMaterialDetail.do?articleId=366>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산형성(2025. 7. 6 인출).

자료2.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자료3. 임신·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지원. \[자료4.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에 바라는 결혼·출산 정책 제언 15\\]\\(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2025. 7. 6 인출\\).</p>
</div>
<div data-bbox=\\)\]\(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20100\(2025. 7. 6 인출\)</p>
</div>
<div data-bbox=\)](https://www.moef.go.kr/sns/cardNewsDtl.do?selectedId=MOSF_000000000072132(2025. 7. 6 인출)</p>
</div>
<div data-bbox=)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20일까지 증대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 급여는 250만원 까지 증가하였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에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서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 정책 현황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된다. 건설임대는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이고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이다¹⁾. 건설임대 유형에서는 행복주택이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LH가 젊은 계층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60~80%)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임대 조건과 기간이 상이하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0년, 저소득 이외 신혼부부는 10년(일정요건 충족 시 14년)까지 지원된다.

다.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지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임신 및 난임 부부지원 대폭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3회로 늘리고 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을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난임 지원 대폭 확대에서는 난임 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필수 약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난임·임산부심

〈표 3〉 임대주택 유형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건설 임대	행복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60~80%	6년~20년
매입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70~80%	10년(일정요건 충족 시 14년)
전세 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연 1~2% 이자율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I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연 1~2% 이자율	10년(일정요건 충족 시 14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유형.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10000\(2025. 7. 6 인출\)](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10000(2025. 7. 6 인출))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유형.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10000\(2025. 7. 6 인출\)](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10000(2025. 7. 6 인출))

〈표 4〉 난임지원 제도

임신 전 건강관리	• 결혼 여부 및 자녀수와 무관하게 희망하는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현행 1회→최대 3회)
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	• 결혼 여부와 무관히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난임 지원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복지부) • 임신과정 지원을 위한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 완화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의 연령구분 폐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여 실질 시술의 총 본인부담도 대폭 경감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임기내 전국 확대를 추진하여 난임시술 정보 제공 및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난임휴가 확대(現 3일,유급1일 → 6일,유급2일) 및 시간단위 분할 사용 등 유연성 제고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여 난임시술 정보 제공 및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난임 휴가 확대가 추진되었으며 현재 난임휴가는 최대 6일(유급 2일)까지 증대되었다.

3. 주요 이슈 및 정책과제

가. 육아휴직 취약계층 및 사각 지대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최근 몇 년 사이 육아휴직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개선되었다. 2024년 육아휴직자 수는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크게 증가하여 남성 사용자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중소기업 재직자의 육아휴직 이용자 수도 2023년도에 비해 1.2% 소폭 증대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

로자의 육아휴직자의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는 아직까지 임금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임금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제도이다.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원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³⁾.

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증가에 따른 전문지원 강화

산모의 고령화, 난임 시술에 따른 다태아 출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5kg 미만 저체중아 출산 비율은 2015년 5.7%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 7.7%까지 도달하였다⁴⁾. 이에 정부는 고위험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

2) 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자 비율 최초로 30% 넘어(2025. 7. 6 인출).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6/notice_view.asp?GUID=426416D6-56D1-4737-9303-2E99BF10BBA5

3) 박종서 외(2024).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4) 한국의 사회지표. 저체중아 비중.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065\(2025. 6.26 인출\)](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065(2025. 6.26 인출))

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9월에는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세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이 발표되었으며⁵⁾, 12월에는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⁶⁾.

이른둥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간을 출생예정일 기준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산으로 인한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를 중앙·권역·지역 3단계로 고도화해 의료 접근성을 균등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과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MICU)에 대한 정채수가를 인상하고, 1.5kg 미만 고위험 이른둥이 대상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최대 1,000%의 가산을 추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없이 필수 치료가 제공되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발달관리 시범사업과 재활의료기관 확충, 돌봄 서비스 연장, 맞춤형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가정 복귀 후에도 부모가 일·치료·육아를 병행하는 데 필요한 통합 지원을 발표하였다.

고위험 임신·출산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전문화된 산전·산후 서비스 지원의 확대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⁷⁾ 이러한 국가 차원의 맞춤형 추진은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이른둥이 지원정책을 포함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 관련 서비스 발굴

및 품질 개선 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

2015년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 평가 조항이 포함된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부터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7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원과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시범평가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도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평가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⁸⁾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평가 도입 이전에 현장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4년까지 383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였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참여한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감염, 소방 안전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추진 실적에 기반하여 2025년도에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가 발표되었으며 7월 22일까지에 대한 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평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

5)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4. 9. 25).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12. 3).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함께 합니다.

7) 권미경 외(202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8) 이정림·손인숙·최병민·엄지원·조미라·김희선(2018).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로 인증을 부여하는 형태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병훈 의원(2024. 6. 19), 서명옥 의원(2025. 2. 3.) 등은 산후조리원 위생, 안전, 인력전문성 등 제고를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입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향후에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및 주택 가격 안정화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도 결국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하고 자녀를 낳고 살기에는 좁기 때문에 선호하는 주거지가 아닌 상황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임대 주택의 공실은 약 5만 가구 수준이며 공실의 50.1%가 전용면적 기준 10평 미만의 소형 평수였다⁹⁾. 즉, 주택공급이 이뤄지더라도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실수요자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따라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에 욕구에 맞는 주택공급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주택건설에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정책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제도인데 주택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사업의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전세 임대 지원제도에서 한도액을 늘렸지만 몇 년 새 급등한 수도권 평균 전세금 수준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¹⁰⁾.

마. 난임치료 초기 집중 지원 강화 및 정서적 지원 강화

출산 연령의 증대로 인해 난임의 치료시기도 점차 늦어지고 있는 추세이다¹¹⁾. 난임의 경우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난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난임의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난임 휴가 사용의 어려움 등을 포함한 사회적 제도 및 환경, 사회적 인식의 미비에 있다¹¹⁾. 최근 난임휴가 일수 증가 등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난임의 치료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난임부부 등이 시술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는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과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¹²⁾. 난임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심리적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난임 가구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2018년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개소하

9) 국토매일(2024. 9. 19). 공공임대주택 빈집만 5만 가구... 절반이 '10평 이하'.

10) 박진백(2022).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국토연구원.

11) Lee, H. S., Lim, Y. C., Kim, D. I., Park, K. S., Lee, Y. J., Ha, I. H., & Lee, Y. S. (2023). Comparative analysis of infertility healthcare utilization before and after insurance coverage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National Patient Sample data. Plos one, 18(11), e0294903.

12) Kim, M., & Ko, J. M. (2020). Development of a coping scale for infertility-women (CSI-W).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5), 671-685.

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최근 전북센터 개소를 포함해 총 13곳의 센터가 개설되었다. 최근에는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변경하여 난임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이러한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력 확보 문제 등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센터가 많았다¹³⁾. 새 정부에서 난임부부의 치료 지원을 강조한 만큼 난임부부의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에 투자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4. 마치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의 결혼·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직 공약의 구체성이 담겨있진 않지만 결혼을 독려하고 신혼부부에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결혼·임신·출산지원 정책은 저출생 상황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 수요자의 민감성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 전반에 '결혼·출산 페널티'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대전환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3) 헬스경향(2023.10.25.).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예산동결로 사업비마저 축소...대기시간은 폭증.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78> (2025. 6. 26 인출).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의 진단과 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유해미 선임연구원

공적 부문의 대표적인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현 정부에서 아동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로서 지원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예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이용 추이 등을 토대로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공급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에 대응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등이 운영되지 않는 휴일이나 이른 새벽, 늦은 야간 등에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한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대기 중이거나 가정내 양육을 더 선호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우려로 인한 경력단절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0~5세 대상 보편적 보육·교육비 지원 등 아동돌봄 정책의 종합적 틀 속에서 실수요자에 주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들어가며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이 어린이집 등 기관 위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가정 기반의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다양화 측면에서 추진되어왔다.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기관을 선호하지 않거나, 기관이용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틈새가 발생하는 가구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한 공공 부문의 사업으로는 2007년에 도입된 아이돌봄서비스와 2014년에 사업명칭을 시간제보육서비스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되는 시간제보육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되어 2010년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2013년 0~5세 무상보육의 실현으로 제기된 기관 미이용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개 사업 모두가 제도 도입 이후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확충은 2023년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명시되어 사업 확장은 물론이고, 지원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예고되어 있다¹⁾.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아동돌봄서비스 부문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 강화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사항을 다루고, 서비스 공급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 밖에도 가정내 양육가구의 고립 육아 해소를 위한 추가 과제를 언급하였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현황과 이용 추이

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연혁과 서비스 유형별 이용 추이를 우선적으로 살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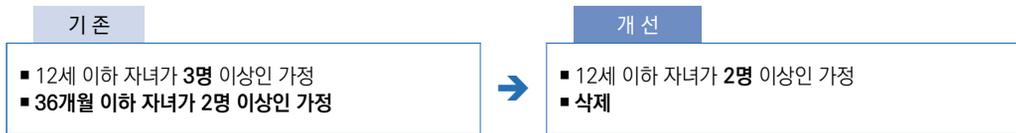
가. 주요 경과 및 지원 현황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지원된다. 우선 부모의 출장, 야간, 아동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양육 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기반의 대리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²⁾.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기관 중심의 비용지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하고, 영아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주요 연혁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어 2009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으로 지원대상을 기존의 영유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서 모든 취업부모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³⁾.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2010년에 신규로 도입되어 지원연령을 당초 만 12개월에서 2014년 만 24개월 이하, 2017년 만 36개월 이하로 점차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간 정부지원 시간은 2019년에는 720시간, 2020년에는 960시간으로 거듭 늘렸다. 정부지원 대상은 2013년에 시간제돌봄 지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자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4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3. 31).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그림 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변경 사항(2025)

1)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2)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15.
 3)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p.16-17.

자부담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⁴⁾, 2025년에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당초 12세 이하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였다.

한편 정부지원 확대에 맞추어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지원 비율은 점차 상향 조정되어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을 기존의 중위 소득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의 경우는 시간당 1,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꾀하고 있다. 또한 2025년 4월 2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인력 자격과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도 커다란 전환을 맞고 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신설하고,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2023년부터 기존에 시·군·구 마다 1개씩 운영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도 변화를 종합해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제도 간 정합성을 위해 보편적

비용지원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돋보인다. 이와 동시에 기관을 선호하지 않는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을 알 수 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앞서 다룬 바와 같이 2025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기존에 전액 부모 자부담으로 이용하던 중위소득 150~200%에 해당하는 '라'형 가구의 경우도 0~5세아는 15%, 6세~12세는 1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체계는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과는 달리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자부담 비용을 달리 적용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의 효과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표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2025)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 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 이하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3. 31).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p.3.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3. 31).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p.3.

〈표 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추이(2017-2024)

단위: 가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시간제 이용	58,489	60,053	66,783	56,525	57,454	61,138	66,515	70,021
종일제 이용	5,057	4,538	3,702	3,138	2,617	2,760	1,890	1,155
기타	-	-	-	-	11,718	14,314	17,695	46,950
전체	63,546	64,591	70,485	59,663	71,789	78,212	86,100	118,126

자료: 1) 2017년-2023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2023 영유아 주요통계. p.43.
 2) 2024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인출일: 2025. 4. 21)

나. 서비스 이용 및 공급 추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24년에 118,126 가구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때 두드러진 변화는 영아종일제 이용가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점이다. 2024년 기준으로 시간제돌봄 이용가구가 70,021가구로 증가한 반면, 영아종일제 이용가구는 1,155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2012년부터 영아 무상보육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가던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가 2023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은 수요 변화의 측면에서 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2023년에 도입된 부모급여 및 2024년에 100만원으로 확대된 부모급여 상향 조정, 육아휴직제도 강화 등 유관 정책의 변화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서비스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취업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 출산 후 직장에 복직하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하지만 영아반 위주의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리양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2024년 기준으로 28,663명이 활동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에 도입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아이돌보미 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인력 양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원활한 인력 양성은 일자리 질에 좌우되므로 국가자격제 도입에 따른 전문성 제고에 부합하는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표 3〉 아이돌보미 현황(2017-2024)

단위: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아이돌보미 수	20,878	23,675	24,677	24,469	25,917	26,675	28,071	28,663

자료: 1) 2017년-2023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2023 영유아 주요통계. p.44.
 2) 2024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인출일: 2025. 4. 21)

3. 주요 이슈 및 쟁점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및 비용부담 완화, 아이돌보미 일자리 질 개선,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⁵⁾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비용부담의 완화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비용지원체계는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은 자부담 수준에 차이를 둬으로써 실제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가구에서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假)수요를 예방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실수요와 상관없는 보편적 지원은 가(假)수요를 유발하여 실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부터 육구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영아에게 보육료를 일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종일제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원 목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요한 가구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규모에 대해서는 필요자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장시간 보육을 기피하거나 사교육을 위한 이른 하원에 따

른 돌봄 공백에 대응하려는 대기자는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용비용이 부담되므로 자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안정적 일자리의 보장은 국가자격제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라고 여겨진다. 이때 급여수준 개선은 안정적 인력 공급의 일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 최소 근로시간의 보장은 안정적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된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의 주당 활동 시간 및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공급의 매칭의 어려움으로 대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 주당 근로시간의 개별 격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보장 문제는 긴급돌봄의 접근성과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의 접근성 제고 방안과의 연계,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임의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한 서비스 연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를 위해 민간 서비스 기관의 관리 및 감독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 공공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이 지속되어 민간 부문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지난 4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등록 민간 서비스 기관의 인력에 대해서는 범죄이력 조회가 가능하여 신원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업체별로 인력 공급 및 관리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아이돌봄 이외 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추세이므로 등록업체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4. 2).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된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정부 개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대기가 길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구에 등록 민간 서비스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체 육아도우미의 재교육을 공공 부문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만하다.

4. 정책 제언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목적에 부합해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지원 목적을 거듭하여 언급하는 것은 지원을 강화하기에 앞서 아이돌봄서비스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는 다음을 견지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설보육 및 돌봄의 사각지대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13년 0~5세 무상보육 실현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돌봄을 충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왔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및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에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한 가구, 이를테면 이른 새벽이나 야간근로 가구, 장시간근로 가구, 주말이나 휴일근로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가 1:1 개별돌봄 방식으로 기관에 비해 이용료가 비싸고, 보편적 서비스가 아

니라는 점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의 지원 수준을 높여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원방식이 타당함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영아자녀 부모의 선택권에 주목해야 한다. 영아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중인 맞벌이 가구, 육아휴직이 힘들거나 원하지 않아서 대리양육이 필요하나 기관보다는 가정내 양육을 더 선호하는 맞벌이 가구가 그들이다. 이들을 위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 부모급여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구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지출비용을 줄이고자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거나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아이돌봄서비스 이외에도 가정내 양육지원을 위해서는 고립된 육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부모급여 도입으로 0~1세 자녀를 둔 가구의 고립된 육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시보육을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 및 지리적 격차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그 추진 동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